

전자신고가이드(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)

신고 전 유의사항

- ✓ '20.1.1.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(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)간 손익 통산이 허용되나, 확정신고기간(양도일 다음해 5월)에만 통산이 가능합니다.

- ⇒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무·과소 납부한 결과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⇒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국내·국외주식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.

- ✓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신고(양도)한 경우로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- ✓ 주식 양도소득 세율은 중소기업, 대주주,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(기타자산) 해당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신고 세율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✓ 홈택스 신고를 위해서는 ①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와 ②엑셀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엑셀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엑셀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
- ✓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 거래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거래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정 여부는 거래한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유의사항 등을 홈택스 “주식양도 신고도우미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접근방법 : 로그인 > 세금신고 > 양도소득세 > 주식양도 신고도우미

1

기본정보 입력

- 홈택스 > 세금신고 > 양도소득세 신고 >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클릭



- 정기신고 >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.



• 기본정보(양도인) 입력

[양도자산종류] 선택

	선택 가능 조합	신고서 작성내용
국내	확정-국내/국외 주식합산 신고 (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 유법인 포함)	① 국내주식 ② 국내주식+국외주식
	파생상품	③ 국내파생상품 ④ 국내파생상품+국외파생상품
국외	국외주식	⑤ 국외주식
	파생상품	⑥ 국외파생상품

- ① 신고구분을 확정으로 선택합니다.
- ② 국내/국외 자산을 구분합니다.
- ③ 양도자산을 국내/국외주식 합산신고 주식으로 선택합니다.
- ④ 연도는 2025년을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.(월은 선택불가)
- ⑤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.
- ⑥ 화면 이동을 위해 [작성완료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2

양수인 기본정보 입력

- ① 양수인의 입력이 필요한 경우 추가(+) 클릭
 - ※ 증권시장안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등 양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.
- ② 양수인의 납세자번호 유형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합니다.
 - ☞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성명, 지분을 입력합니다.
- ③ 양도자와의 관계가 '무관계'가 아닌 경우,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.
- ④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,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 - ☞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 목록에서 (☑)클릭 후 선택자료 수정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.
- ⑤ 화면 이동을 위해 [입력완료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

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주식을 조회 및 추가하려면 [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] 버튼을 누르세요.

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

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

-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신고서의 내용이 조회됩니다.
- 예정 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고내역을 선택 후 [선택완료] 버튼을 누르세요.
- 산출세액, 납부할세액은 예정신고시 제출된 금액임으로 확정신고서 작성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작성중인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내역이 존재할 경우 모든 내용이 사라집니다.
- 등록할 물건 수가 500건 초과일 경우에는 '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' 화면에서 엑셀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선택	과세기간	신고서종류	신고구분상세	접수방법	신고일자	산출세액	납부할세액	물건수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2025-01	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	수정신고	대내작성	2024-10...	58,684,...	58,684,...	2
<input type="checkbox"/>	2025-01	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	정기신고	대민작성	2023-01...	491,837	471,837	1
<input type="checkbox"/>	2025-01	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	수정신고	대내작성	2024-10...	1,784,7...	1,784,7...	12

닫기 선택완료

※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신고 미리채움(Pre-filled)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양도자산을 입력해 주세요. 입력된 자산은 총 3 건입니다.

엑셀 양식 내려받기 엑셀 올리기 추가하기

췌가나다 작성완료 X

췌가나다 에 대한 양도내역이 작성완료 되었어요.

양도소득금액은 4,500,000원 이예요.

수정/상세보기

췌나다라 작성완료 X

췌나다라 대한 양도내역이 작성완료 되었어요.

양도소득금액은 4,500,000원 이예요.

수정/상세보기

-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다량의 양도 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업로드 양식(엑셀)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가능
- 업로드서식, 작성방법, 양도물건종류별 세율코드 및 주식종류 확인가능

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 입력/수정 도움말 초기화 X

국내/국외구분
 국내주식 국외주식

국외자산국가 / 검색

국제증권식별번호(ISIN코드)

국외자산내용

주식정보 주식검색

- 사업자번호
- 주식종목코드
- 주식종목명/상호명

양도 (단위:원)

- 양도일자
- 유형
- 양도주식수
- 주당 양도가액
- 양도가액

취득 (단위:원)

- 취득일자
- 유형
- 주당 취득가액
- 취득가액

필요경비 (단위:원)

필요경비

- ① 국내/국외 구분, 사업자번호, 양도일자, 취득일자, 양도가액, 취득가액 등
* 표시항목 필수 입력

주식검색 X

사업자번호
조회

종목코드
 종목명

주식발행법인 및 종목코드 목록

※ 양도일 현재 기준, 비상장주식은 사업자번호로 조회하여 주식종목코드 항목이 공백인 항목을 선택하세요.

선택	번호	사업자등록번호	사업자명	주식종목코드	주식종목명
🔒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.					

1 다음 > 총 0건

닫기
선택완료

- ②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상장법인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
[주식검색] 메뉴 선택 > 종목코드(4자리 이상) 또는 종목명(2자리 이상)
입력 > 조회 > 목록에서 선택 > 선택완료

양도소득금액 ?

전체 양도소득금액 원
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
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원

세울 선택 도우미

주식 세울선택 도우미

양도소득세 세율종류를 찾아드립니다.

1 양도한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가요? [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조회하기](#) 예 아니오

2 양도한 주식이 상장주식인가요?
한화생명케미칼의 주식은 2025-10-05 현재 상장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구축 진행 중으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. 해당 양도 주식의 상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※ 위 진단결과는 참고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상장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예 아니오

3 양도자가 양도한 주식의 대주주인가요?
귀하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구축 진행 중으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.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주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※ 위 진단결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로써 연도 중에 신규(이전)상장된 경우,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등에는 증권회사 등을 통해 대주주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예 아니오

세울 찾기

세울찾기 결과

-선택-

-선택-

-선택-

세울 적용하기

③ 세울 선택 도우미를 클릭한 후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, 중소기업 여부 등을 선택하고 조회 시 이에 맞는 양도물건 종류가 표시되고 적정 여부 확인 후 세율구분 및 주식종류 선택

취득 ? (단위:원)

2020-07-07

[01] 매매

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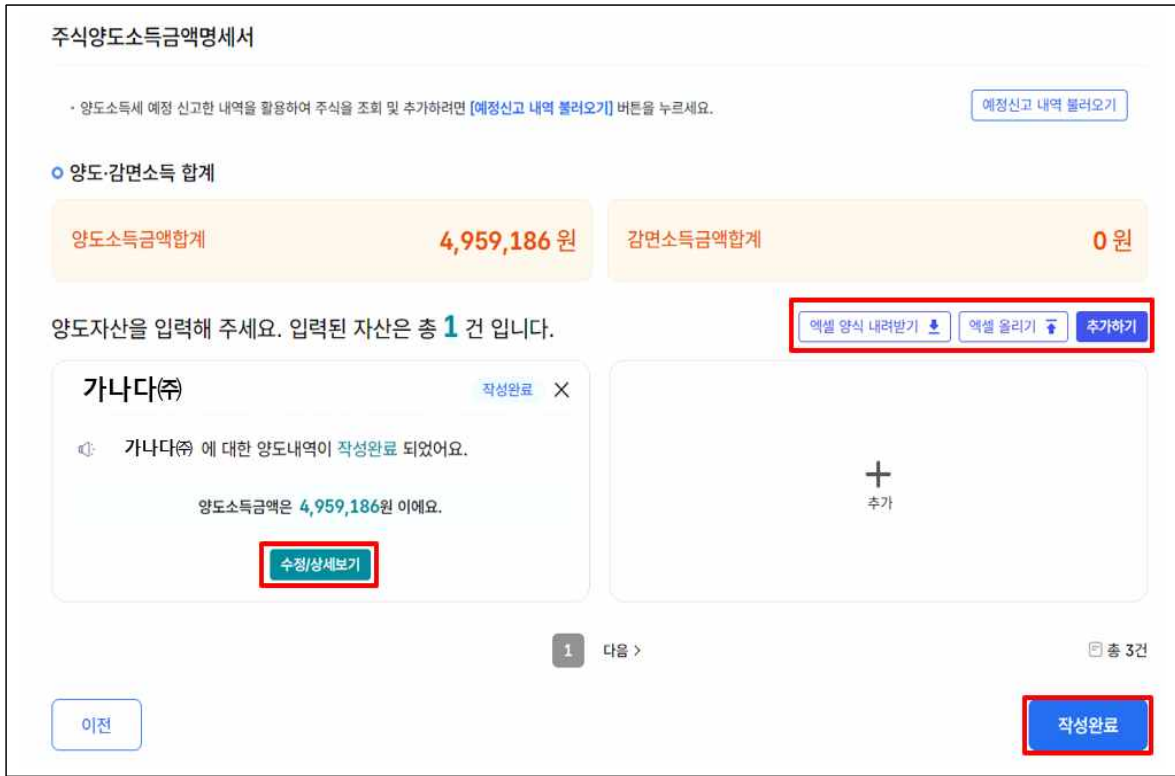
100,000

0

감면종류 및 소득금액

주식거래내역서 입력(대주주 주식거래에 한함)

- ④ 취득가액, 필요경비 등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/감면율까지 입력
- *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'여'선택
- ⑤ 대주주 주식거래인 경우 펼치기 > 입력/수정 > 주식거래내역서 작성 > 입력완료 클릭



- ①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도자산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수정/상세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완료 클릭
-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하기 위해 업로드 양식(엑셀)을 다운로드 및 작성한 후 업로드 가능
 - ☞ 업로드서식, 작성방법, 양도물건종류별 세율코드 및 주식종류 확인가능
- ③ 양도소득금액명세서 목록에서 신고 대상을 확인하고 작성완료 클릭

세액계산

적용세율 총 1 건 입니다.

합산신고대상 불러오기
세율 추가하기

중소기업외 대주주, 중소기업 대주주		작성완료 X
양도소득금액	900,000 원	
이전신고 양도소득금액 합계	7,201,403,416 원	
양도소득기본공제	원	
과세표준	7,202,303,416 원	
세율	25 %	
산출세액	1,785,575,854 원	

수정/상세보기

+
추가

이전
작성완료

① 합산신고대상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 양도신고서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.

☞ 기 양도신고서의 양도자산이 단일세율 대상인 경우 합산신고가 불필요하며, 누진세율인 경우 반드시 합산신고가 필요합니다.

② 다음화면 이동을 위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.

5

신고서 제출 및 접수 완료

- 적용세율별 양도소득금액, 과세표준, 세율, 산출세액 확인
- (합계 란) 소득금액, 과세표준, 산출세액 정상 반영 확인

세목구분	합계	1/2	2/2
		61 중소기업의 국내소득주주, 국외주식	63 중소기업(외) 대주주
양도소득금액	9,400,000	400,000	9,000,000
기산고-결정-결정환양도소득금액합계	0	0	0
소득감면대상소득금액	0		
양도소득기본공제	0	0	0
과세표준	9,400,000	400,000	9,000,000
세율(%)		20	20
산출세액	1,880,000	80,000	1,800,000
감면세액	0	0	0
외국납부세액공제	0	0	0
원천징수세액공제	0	0	0
연금계좌세액공제	0	0	0
전자신고세액공제	0	0	0
가산세	무(과소)신고	0	0
	납부지연	0	0
	가장불성실등 (양산가액적용)	0	0
	계	0	0
기산고, 결정, 결정세액, 조정공제	0	0	0
납부할세액	1,880,000	80,000	1,800,000
농어촌특별세	소득세감면세액	0	0
	세율	0	20
	산출세액	0	0
	수정신고가산세등	0	0
	기산고, 결정, 결정세액	0	0

○ 분납 및 자진납부

·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.
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: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: 그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

양도소득세 (단위:원)	농어촌특별세 (단위:원)
자진납부할 세액: 1,880,000	자진납부할 세액: 0
분납·물납할 세액: 0	분납·물납할 세액: 0
자진납부세액: 1,880,000	자진납부세액: 0

○ 환급금 계좌신고

금융기관명: -선택- 계좌번호: _____

이전 작성완료

-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, 분납 물납할 세액을 입력
-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
양도소득세		
(16) 자진납부할 세액	(17) 분납 물납할 세액	(18) 자진납부세액
16,000,000 원	6,000,000 원	10,000,000 원

▶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: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
양도소득세		
(16) 자진납부할 세액	(17) 분납 물납할 세액	(18) 자진납부세액
22,000,000 원	11,000,000 원	11,000,000 원

▶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: 그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

• 신고서 접수 완료

파**님의 납부할 세액** 1,880,000 원

신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1 이에 동의합니다.

☞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여 2026-03-02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 **신고서 제출하기**

양도소득세 정기 신고
2026년 05월 08일 16시 14분에 완료되었습니다.

바로 납부하기 납부서 출력하기

▲ 꼭 확인하세요!

-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장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.
-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신고자 본인(세무대리인)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.

송달장소 (변경)신고 증명서류 제출 납부기한 연장신청

설문조사 바로가기 **신고서(접수증) 출력하기** 신고내역 확인하기

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

사용자 ID	trn_test01	사용자명	파갈림		
접수번호	132-2026-2-600001633376	접수일시	2026-05-08 10:03:07	접수결과	정상

■ 제출내역

상호(성명)	파갈림	사업자(주민)등록번호	740702-----
신고서종류	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	접수방법	인터넷(작성)
첨부한서류	0종	신고구분	증가(확정) / 증가신고

국세청 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

■ 상세내역 (단위 : 원)

양도연월	2026년 10월	양도소득세 과세표준	9,400,000
양도소득세 납부(환급)할세액	1,880,000	농어촌특별세	0
양도소득세 분납할세액	0	농어촌특별세	0
양도소득세 납부세액	1,880,000	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	0

※ (중요)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(주의) 장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.

※ (특이)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(안내)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, 「양도소득세 신고」 첫 화면에서 **【신고 부속·증빙서류 제출】**를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으며, [신고 부속서류 제출] 화면에서 가장 적소번호를 부여받아 **팩스로도 제출** 할 수 있습니다.

※ 지방소득세 결정청구 관련 사항은 국세기 시 문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(안내) 국민연금소득세 신고(결정청구)은 제외(출력)하여 「신고내역 조회(접수증·납부서)」 또는 「전자신고결과조회」 화면에서 「양도소득세 신고」 버튼을 클릭하세요.